

제 2015 - 1 호

행정대집행 영장

대상자 : 국·공유지내 불법 시설물 설치자 귀하

주 소 : 원창동 599, 395, 395-3, 395-4, 395-5, 395번지

마전동 산100-1번지

귀하 소유의 불법 시설물(컨테이너, 적재함 등)을 2015년 12 월 7 일까지
철거 하도록 계고 하였으며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구
에서는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
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
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15.12.09(수) 10시	인천서구청 (건설과)	행정6급	박은선	150,000원 (불법시설물 1건당)

2015 년 11월 20일

인천광역시
서 구 청 장

